

인천대학교 생활원

기숙사생 생활 수칙



국립인천대학교 생활원
INCHEON NATIONAL UNIVERSITY
HOUSING AND RESIDENTIAL SERVICES

인천대학교 생활원 기숙사생 생활 수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인천대학교 생활원(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기숙사생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인천대학교 기숙사생 생활 수칙(이하 "생활 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적용) 이 수칙은 인천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모든 기숙사생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기숙사 내 생활

제4조(기숙사 출입 및 생활) ① 각 기숙사 출입문 개방 시간은 05:00, 폐쇄 시간은 02:00로 한다.

② 기숙사생이 아닌 외부인은 기숙사를 출입 할 수 없다.

③ 기숙사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 건물 안에 동반 출입할 수 없다.

④ 외부인이 호실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 방문할 수 있다.

⑤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 외의 다른 기숙사 출입은 불가하며, 출입 시 외부인으로 간주 되어 벌점이 부과된다.

⑥ 기숙사생의 외박은 허용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 외박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기숙사생 본인에게 있다.

⑧ 중간,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한하여 출입 통제를 해제하고 24시간 개방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출입 통제 해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며 어길 시 벌점 등으로 징계한다.

1. 외부인 무단 출입 및 숙박 제공 행위

2. 공동생활 질서를 저해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3. 기숙사생 및 기숙사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

제5조(기숙사생 준수 사항) ① 기숙사 내에서는 정숙해야 하며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기숙사 생활 수칙 준수
 2. 기숙사 내에서는 품행 유지
 3. 호실 안의 청결 상태 유지
 4. 퇴사 시 호실 청소와 정리 정돈
 5. 각 기숙사 내 간이취사실 및 휴게실을 제외한 장소에는 음식 반입 금지
 6. 공고, 방송 및 안내문, 휴대폰 문자, 기타 게시물 등 내용 숙지 및 준수
- ② 기숙사 내에서는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금지하며, 위반 시 강제 퇴사 및 벌점을 부과한다.

1. 위험물의 반입 및 허가받지 않은 전열 기구, 가전제품의 무단 반입(다림질은 세탁실에 설치된 공용 다리미 이용)
2. 도박, 음주, 흡연, 폭행 및 절도
3. 외부인 무단 동반 출입 및 숙박 행위
4. 간이취사실 및 휴게실 이외의 취식, 취사 행위
5. 낙서 및 문서의 무단 전시, 무단 배포, 무단 방송
6. 타인 명의 우편물의 수취 또는 개봉
7. 지정된 장소 이외의 쓰레기 투기와 환경오염 행위
8. 반려동물 사육 행위
9. 기타 질서 훼손이나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③ 기숙사생은 기숙사 내 모든 물품을 절약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숙사생은 입사 후 시설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시설 불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기숙사생은 개인 호실의 청소 책임을 진다. 청소점검 및 퇴사 시 청소가 안 된 경우 [별표 1]에 의거 벌점 부과 및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기숙사생은 임의로 호실 및 호실 내 가구를 이동할 수 없다. 임의 이동 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별표 1]에 의거 벌점이 부과된다.
- ⑤ 기숙사는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내국인과 외국인은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며, 상호 간의 차별 및 편견을 금지한다.

제6조(공용시설 이용 준수사항) ① 각 기숙사별 공용시설의 이용 시간은 02:00까지로 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기숙사생들은 공용시설 이용에 있어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을 위해 청결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1. 세탁실 및 건조실
 - 세탁 및 건조가 종료된 후 세탁물은 즉시 회수 하여야 한다.
 - 세탁물 건조는 지정된 장소 외(복도 및 출입구, 난간, 비상계단 등)에 세탁물을 건조할 수 없다.
 - 지정된 장소 외 건조 시 [별표 1]에 의거 벌점이 부과된다.

2. 컴퓨터실

- 컴퓨터 이용 시에는 일체의 게임 행위 및 음식물 취식을 금지한다.

3. 독서실

- 시험 기간에는 24시간 개방하며 시험 기간은 학사 일정에 따른다.
- 책상에 물건이 방치되어 있으면 관리자가 경고장을 부착하고 이를 회수 할 수 있다.
- 음식물 취식 및 자리 독점을 금지한다.

4. 체력단련실

- 체력 단련실을 이용하는 기숙사생은 필요한 복장을 갖추어야 하며(운동복 및 운동화 착용, 개인 수건 준비 등) 기구 이용 방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 02:00 이후에는 취침 등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 되므로 이용을 자제한다.

5. 세미나실

- 세미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숙사생은 각기 다른 3인 이상 기숙사생을 포함하여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한다.
- 시험 기간에는 24시간 개방한다.
- 세미나실 내에서는 음식물 취식을 금지하며, 이용 후 정리 정돈을 해야 한다.

6. 간이취사실

- 간이취사실 내에서는 정숙 한다.
- 간이취사실에 생활 쓰레기 배출 시 벌점이 부과된다.
- 택배 포장재(상자 또는 비닐 등)에서 물품만을 수령한 후 이를 분리 배출하지 않고 간이취사실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당 벌점을 부과한다.
- 타인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변질된 음식물, 내용물 대비 과도한 용기 등)의 보관을 금지하며, 위생 안전 등을 위해 변질된 음식물은 즉시 폐기하며, 폐기에 대한 책임은 기숙사생 개인에게 있다.
- 제1기숙사에서는 통합행정실에서 수령한 물품 보관 박스를 훼손(낙서 등)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또는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 취사 물품은 배부된 보관 박스 외의 공간에 보관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관된 물품은 관리자가 폐기할 수 있다.
- 02:00 이후에는 취침 등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되므로 이용을 자제한다.

7. 택배실

- 택배실은 기숙사별로 운영되며, 수령 시간은 각각 다를 수 있다.
- 타인의 택배를 무단 반출 시 절도에 해당 된다.
- 도착 후 7일 이내 수령 하지 않은 택배물은 관리자가 폐기할 수 있다.
- 택배 포장재(상자 또는 비닐 등)에서 물품만을 수령한 후 이를 분리 배출하지 않고 택배보관실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당 벌점을 부과한다.

8. 그룹 토의실

- 그룹토의실을 이용하는 기숙사생은 자리를 독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책상에 물건이 방치되어 있으면 관리자가 경고장을 부착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다.
- 음식물 취식을 금지한다.

③ 사전 허가 없이 기숙사 내 출입 시 기숙사생 및 외부인은 동일하게 [별표 1]에 의거 하여 벌점을 받는다.

제 3 장 학생 지도 및 시설관리

제7조(점검) ① 통합행정실 및 관리사무실에서는 필요한 사유(시설 점검·보수, 화재 점검, 소독, 민원 처리 등)가 발생한 경우 예고와 함께 기숙사생의 부재와 상관없이 호실을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및 응급 상황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고 없이 출입할 수 있다.

③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또는 지도한다.

1. 호실 내 생활환경 및 시설 이상 유무 점검
2. 안내 및 공지 사항
3. 기타 기숙사 내 준수사항 점검

④ 점검 시 호실 내에 허가 되지 않은 물품이 있을 시 즉시 압수 및 벌점이 부과된다.

제8조(면담 및 건의) ① 기숙사생은 생활 전반에 대한 불편 사항 및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생활원장에게 면담 및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생활원은 민원(방문 및 유선)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하여 대화 및 상황을 녹화·녹음을 할 수 있다.

제9조(치료 경비) 질병 발생 시 치료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자기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시설물 관리 및 고장 신고) ① 각 기숙사 내·외에 비치 및 설치되어 있는 장비, 기물 등 공용물은 사전 허가 없이 이동을 금지한다.

② 기숙사생은 각 기숙사에 별도로 구축된 시설 불편 신고 시스템에 의해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③ 기숙사생은 입사 기간 중 시설물 파손 시 제1기숙사는 통합행정실, 제2, 3기숙사는 관리사무실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④ 통합행정실 및 각 기숙사 관리사무실에서 정당한 사유로 호실 방문 및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거나 퇴사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기물 변상) 기숙사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기물 및 물품(카드키 포함)을 분실 또는 파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CCTV) 확인 및 처리) ① 기숙사생 및 관리책임자는 각 기숙사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영상정보(CCTV)를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미준수 시 법적 책임을 진다.

② 기숙사생의 개인영상정보(CCTV) 확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확인 신청자는 각 기숙사 통합행정실 또는 관리사무실에 확인 신청서 [별지 1]을 자필로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해 확인 신청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책임자는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여부 또는 제한·연기·거절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확인 신청자는 관리책임자의 통지를 받은 후 수사기관 의뢰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공개한 열람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열람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 이외의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조치를 취한 후 열람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비식별 조치(모자이크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열람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⑤ 수사기관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관의 영장, 법원 제출 명령 등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⑦ 본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4 장 게시물 공고 및 행사

제13조(게시물 공고) 광고물 게시 및 배포는 사전에 생활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행사 및 집회) 기숙사 내의 모든 행사와 집회는 3일 전에 생활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상·벌점 및 징계처분

- 제15조(상·벌점제도)** ① 생활원장은 기숙사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며 기숙사 생활에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기숙사생에 대하여 상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상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생활원장은 기숙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기숙사생에게 상점을 줄 수 있다.
- ③ 생활원장은 기숙사생의 수칙 위반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④ 벌점 상쇄는 벌점 10점 이전에 상쇄해야 한다.
- ⑤ 기숙사생은 본인의 벌점 현황을 본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기숙사생 본인에게 있다.
- ⑥ 벌점은 차기 년도 입사 선발 점수에 반영된다.
- ⑦ 상점은 벌점 상쇄만 가능하며, 차기 학기 입사 선발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 ⑧ 입사 보장으로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의 벌점은 2학기까지 유지(별도선발자 포함)되며, 차기 년도 기숙사생 선발 시 반영 된다.

제16조(징계 등) ① 벌점

1. 징계는 벌점 7점 이상 누적 시 경고 조치하고, 벌점 10점 누적 시 강제 퇴사 된다.
2. 별도 선발자는 해당 학부(과) 및 기관에 고 벌점자(7점 이상) 벌점 사항을 통보 하며, 고 벌점자(7점 이상) 인원에 따라 다음 학기 배정 인원이 조정된다.
3. 강제 퇴사자는 퇴사 후 1년간 재입사 할 수 없고, 1년이 지난 후 기숙사 입사 신청 시 벌점은 '0'점 처리된다
4. 벌점 중 영구 퇴사에 해당 하는 경우 기숙사 입사를 영구히 제한하며, 퇴사 징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퇴사하여야 한다. 단, 폭력, 폭행, 성추행 및 성폭력 가해자는 발견 또는 인지된 즉시 퇴사 조치 된다.
5. 기숙사 운영 정책에 반하는 심각한 저해 행위 및 선동 행위를 한 자는 즉시 영구 및 강제 퇴사 조치 되며, 재학 중 입사를 불허한다.
6. 생활원장은 강제 퇴사 대상자에 대해 면담 또는 징계소명서 등을 검토하여 1회에 한하여 해당 학기 정기 퇴사일까지 강제 퇴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단, 벌점 10점은 유지되며, 다음 학기부터 1년간 입사를 제한 한다.
7. 강제 퇴사자의 퇴사 유예기간 중 벌점 추가 부가 시, 유예는 취소되며 즉시 영구 퇴사 조치 한다.
8. 1학기 입사자 중 정기 퇴사 전까지 벌점 10점인 기숙사생은 입사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며, 1년간 기숙사에 입사할 수 없다.

② 봉사활동

1. 생활원장 및 담당 직원에게 별점을 받은 기숙사생은 기숙사 내에서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직원의 지도하에 봉사활동을 한다.
2. 기숙사에서 진행하는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활동 참여 시 기준에 의거 별점을 상쇄할 수 있다.

제 6 장 기숙사 자치회

제17조(목적) 기숙사 자치회는 기숙사 발전과 기숙사생의 친목 및 단합,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설치) 기숙사 자치회는 기숙사를 통합하여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두고, 자치회원은 생활원 서포터즈(도미크루 : Dormie Crew) 활동을 겸한다.

제19조(구성) ① 기숙사 자치회 임원(회장, 부회장) 지원자는 생활원에 입후보로 등록하고 기숙사 학생들의 비밀 투표로 선출되며, 최다득표자로 선출된 회장, 부회장이 회장, 부회장 포함 최대 10명 내로 자치회를 구성하되 학과(부)를 다양하게 구성한다.
② 회장이 공석인 경우 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한다.

제20조(임명) 비밀 투표로 당선된 회장, 부회장, 서포터즈 회원은 생활원장이 임명한다.

제21조(임기) ① 자치회 및 서포터즈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기숙사 거주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자치회 및 서포터즈 임기 중 별도로 정한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중도에 해임할 수 있다.

제22조(활동) ① 자치회는 기숙사 발전을 위하여 기숙사에 다양한 의견 등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기숙사생들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해 적극 임해야 한다.

③ 자치회는 기숙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점검 활동, 정기입사 및 퇴사 등에서 기숙사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참여 및 봉사를 할 수 있다.

④ 기숙사 자치회장은 생활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각 민자(BTL)기숙사 자치회 임원은 사업시행자의 성과점검 및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다.

⑤ 해당연도 자치회는 2학기 정기 퇴사 전 다음 학년도 자치회 구성을 위하여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야 하며, 다음 학년도 자치회에 인수인계 해야 한다.

⑥ 서포터즈는 별도의 회칙을 정하여 활동하며, 회칙을 준수해야 하고, 회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 자격을 박탈한다.

⑦ 서포터즈는 생활원의 주요 운영 사항 등 생활원의 주요 소식, 행사, 정보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건전한 생활 문화를 확산하여 생활원의 발전과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제23조(회의) ① 자치회 및 서포터즈(도미크루)는 월 1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생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원 자치회 및 서포터즈는 필요시 회의를 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는 담당 직원과 공유해야 한다.

제24조(혜택) ① 자치회 임원 및 서포터즈 회원은 자치회 활동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생활원장은 자치회원 및 서포터즈(도미크루)의 평가 및 혜택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5조(시행세칙) 본 생활 수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요사항은 생활원장이 정하여 시행하고 다음 운영위원회 개최 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기숙사생 생활 수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수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수칙 등에 따라 시행한 기숙사생 생활 수칙은 본 운영 수칙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본다.

인천대학교 기숙사 상 · 벌점 기준표

상 점 기 준	
상 점	내 용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명예 선양, 선행자, 모범 기숙사생 · 생활원장이 인정하는 모범 기숙사생 및 응급구조, 간병, 위급상황 신고
3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원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여 생활원이 제안을 수용한 기숙사생 ■ 생활원, 자치회에서 주최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한 기숙사생
2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원, 자치회 주최 행사 도우미 ■ 공익 제보 ■ 기숙사 내 봉사활동

벌 점 기 준	
벌 점	내 용
영구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마약, 대마 등)의 소지, 복용, 유통 등 일체의 행위 ·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 행위 ·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폭력, 폭행 등 안전 위협 행위(즉각 퇴사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내/외에서의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행사한 행위 · 타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행위 등 ■ 화재 등 기숙사 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단체생활 부적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배려 및 양보를 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등
강제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내 흡연 (호실 및 2층 테라스 포함) ■ 강제 퇴사 유예 기간 중 벌점을 받은 기숙사생 ■ 호실 및 기숙사생 카드를 임의로 양도, 양수, 대여한 행위 ■ 정기 퇴사 이후 입사 미신청자가 무단으로 기숙사에 잔류한 학생 및 정기 퇴사 이후 개인 물품을 방치 한 학생 ■ 타 기숙사 및 이성 동(층) 무단출입 ■ 무단출입 및 이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이 금지된 출입구 또는 출입 지역이 아닌 곳으로 출입 또는 이탈
7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된 벌점 10점 ■ 외부인 기숙사 출입 및 숙박 제공(기숙사생 및 외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허가 없이 기숙사 내 출입
7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내 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내 주류 반입, 기숙사 실내/외(B, C동 2층 테라스 포함) 음주

<p>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피드게이트 출입 규칙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지문으로 타인을 출입시키는 행위 · 한 번에 여러 명이 한 공간으로 들어오는 행위 · 스피드게이트를 부적합한 방법으로 넘어오는 행위 ■ 기숙사 내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 미허가 물품 반입 및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장판, 난로, 다리미, 커피포트, 촛불, 모기향, 부탄가스, 에어프라이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리튬이온 배터리, 냉장고(미니 냉장고 포함) 등 ■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p>3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물 및 시설물의 훼손 및 비품 무단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내 모든 공용기물 및 시설물 훼손(원상회복 또는 실비 변상) · 기숙사 내 모든 공용기물의 무단 반출 ■ 계도 및 지시 사항 불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손한 언행 · 관리책임자의 호출 및 점검에 응하지 않은 행위 · 호실 내 외출용 신발 착용 후 생활 ■ 공동 생활 질서 위반 및 품위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애정 표현 등 단정치 못한 품행 · 만취 귀사 후 기숙사 내에서 학생 품위를 손상한 자(구토, 주사 등) ■ 배정호실 임의 변경 및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없이 기숙사생 임의 배정 호실 및 자리 변경 또는 미신고 · 기숙사생 중 타 호실에서 숙박(제공, 제공받는 자), 룸메이트의 양해가 없는 출입 등
<p>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실 청소 / 정리 정돈 불량(개인 및 공용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사 후 호실 점검 시 호실 청결 상태 불량 ■ 지정 장소 외 세탁물 건조 또는 물건 적재 (복도 등 소방방법 위반 행위) ■ 소란 및 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내, 기숙사 앞 광장에서 면학 분위기 저해, 취침을 방해하는 소란 및 소음 행위 등 ■ 지정 장소 외 미 허가 음식물 반입 및 취식 ■ 점검 및 행사 불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교육 및 훈련(O.T/소방 대피 훈련 등)에 무단 불참 · 입사 서약서 미제출 · 퇴사 시 호실 카드 미반납 · 포털 퇴사 미신청 ■ 공용실 이용 수칙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취사실, 체력단련실, 정보검색실, 세미나실, 독서실, 택배보관실 등 ■ 쓰레기 분리수거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무단 투기,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불이행 ■ 공고문 훼손 및 미허가 게시물 부착 ■ 스페어 카드 대여(1회 30분 이상)
<p>1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어 카드 대여(3회)

